

#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900
----------	------

2021년 11월 25일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
- 나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15일
- 다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20일
- 라. 상정결과 :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
(2021년 11월 25일, 상정·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문화본부장 주용태)

- 가. 서울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,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
- 나.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### (1) 사업개요

- 사무명 : 세종문화회관 출연금
-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
- 사무내용
  - 세종문화회관의 운영
  -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  -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보급 및 조사·연구
  -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
  -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 -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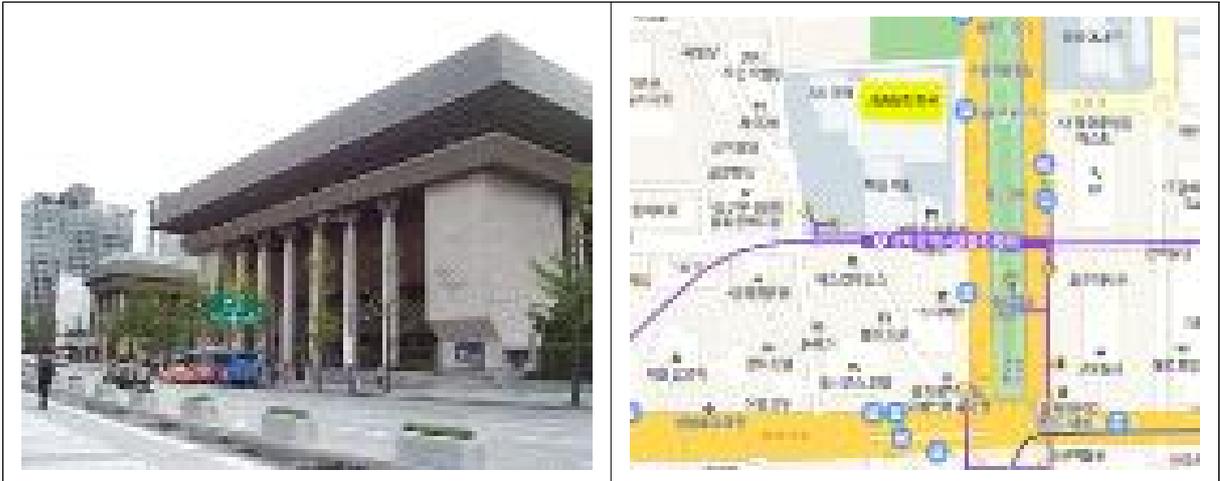
## (2) 출연 개요

- 출연방법 : 市 예비비 사용
- 출연금액 : 124,669천원
  - ※ 총 출연금액 35,787,458천원 (기정 출연금액 35,662.789천원)
- 출연금 편성 내용
  - 임대료 감면에 따른 수입감소분 보전 : 124,669천원
- 출연 필요성
  - 코로나19 관련 임대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분 보전
    - 「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」 정책에 따라 , 피해를 입은 세종문화회관 임차인(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포함) 지원을 위해 6개월 간 임대료 및 공용관리비의 50% 감면 조치하였기에 손실 보전액에 대한 예비비 사용 필요

## (3)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

-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
- 규 모 : 대지 55,758㎡, 건물 63,396㎡ (지하 3층, 지상 6층)
  - 공연장(세종대극장, M씨어터, 체임버홀, S씨어터), 전시관(세종미술관, 세종충무공이야기), 교육시설(세종예술아카데미) 등

○ 전경 및 위치도



다. 참고사항

(1) 관계법령

○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의 결을 얻어야 한다.

○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,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)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(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)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16조(사용료의 조정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·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(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)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

○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

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, …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(2) 관련 방침 :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<4차, 시장방침 제29호, 공기업담당관-7785(2021.07.15.)>

- 시유재산 6개월 간 임대료 50% 감면 및 공용관리비 감면
- 손실분 및 환급분 보전 예비비 편성

(3) 감면규모 : 세종문화회관 및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입점업체 9개소

(단위 : 천원)

감면대상	감면 임대료(A)	감면 공용관리비(B)	총계 (C=A+B)
9개소	122,579	2,090	124,669

〈임차료, 공용관리비 감면 세부현황〉

(단위 : 원)

업체명	임차료	관리비	업체명	임차료	관리비
조류직 (약기점)	7,781,746	-	이마트24( 편의점)	19,972,297	-
카페베네	32,962,239	313,800	스낵 하우스	4,993,074	139,200
담소마루 (카페)	14,367,123	322,650	전망대 카페	13,282,490	-
라포레스타( 식당)	16,851,254	692,151	테라스 카페	3,967,497	297,951
베이커리 카페	8,400,986	324,110	소 계	122,578,706	2,089,862
			총계		124,668,568

- 공용관리비(3.3㎡/5,000원 산정)
- 조류직 : 체임버홀 내부로 별도 공용면적 없어 미부과
- 1건 부과사항 : 이마트, 스낵하우스/ 전망대, 테라스 카페

(4) 예산조치 : 市 예비비 사용

(5) 합 의 : 예산담당관 예비비 사용협조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경옥)

#### 가. 동의안 개요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본 동의안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에 앞서 코로나19 피해 세종문화회관 임차(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포함)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을 위한 출연 여부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것임.

#### 나. 출연의 필요성

- 서울시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‘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계획’을 마련하고, 시유재산 및 시투자·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 등에 대해 임대료와 공용 관리비를 감면해 주고 있음.
- 세종문화회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출연금을 제외한 주수입 원인 공연·대관·임대사업의 달성률이 각각 26%, 28%, 10% (9.30.기준)로 매우 저조하여 일부 예술단 공연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적자가 예상됨.

따라서 「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」(4차, 시장 방침 제29호)에 따라 임차인에게 6개월 간의 임차료 및 공용관리비의 50%를 감면해 주고 그 손실보전액을 시예비비로 출연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임.

## 다. 출연규모의 적정성

- 이번 감면은 2021년 7월부터 12월 사이 세종문화회관과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에 입점한 9개소가 대상이며, 임대료 1억 2천3백만원과 공용관리비 2백만원, 총 1억 2천5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.

(단위 : 천원)

감면대상	감면 임대료	감면 공용관리비	총계
9개소	122,579	2,090	124,669

### ※ 감면대상 업체

- 1)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매출기준에 부합<sup>1)</sup>하고 피해사실 입증 가능한 경우
  - 소기업 : 소매업 등 평균매출 50억 이하, 음식점업 등 평균매출 10억 이하
  - 소상공인 : 소기업 기준 + (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: 10명 미만, 그 외 업종 : 5명 미만)
- 2) “다중이용시설” 등의 수익판매시설로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세종문화회관의 공연과 전시취소 및 임시휴관으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사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조치 결정을 한 9곳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체이므로, 해당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

1) 소매업 평균매출액 50억원 이하, 음식점업 10억원 이하(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3)

〈임차료, 공용관리비 감면 세부현황(안)〉

(단위 : 원)

연번	업체명	임차료 감면액	관리비 감면액
1	조뮤직(악기점)	7,781,746	-
2	카페베네	32,962,239	313,800
3	담소마루(카페)	14,367,123	322,650
4	라포레스타(식당)	16,851,254	692,151
5	베이커리카페	8,400,986	324,110
6	이마트24(편의점)	19,972,297	-
7	스낵하우스	4,993,074	139,200
8	전망대카페	13,282,490	-
9	테라스카페	3,967,497	297,951
총계		122,578,706	2,089,862
		124,668,568	

- 공용관리비(3.3<sup>m</sup>/5,000원 산정)
- 조뮤직 : 체임버홀 내부로 별도 공용면적 없어 미부과
- 1건 부과사항 : 이마트, 스낵하우스/ 전망대, 테라스 카페

입법조사관	연락처
심형준	02-2180-8113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90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10월 15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,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

나.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1) 사무명 : 세종문화회관 출연금

2)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

### 3) 사무내용

- 세종문화회관의 운영
-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-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보급 및 조사·연구
-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
-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

### 나. 출연 개요

1) 출연방법 : 市 예비비 사용

2) 출연금액 : 124,669천원

※ 총 출연금액 35,787,458천원 (기정 출연금액 35,662,789천원)

3) 출연금 편성 내용

- 임대료 감면에 따른 수입감소분 보전 : 124,669천원

4) 출연 필요성

- 코로나19 관련 임대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분 보전

· 「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」 정책에 따라 , 피해를 입은 세종문화회관 임차인(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포함) 지원을 위해 6개월 간 임대료 및 공용관리비의 50% 감면 조치하였기에 손실 보전액에 대한 예비비 사용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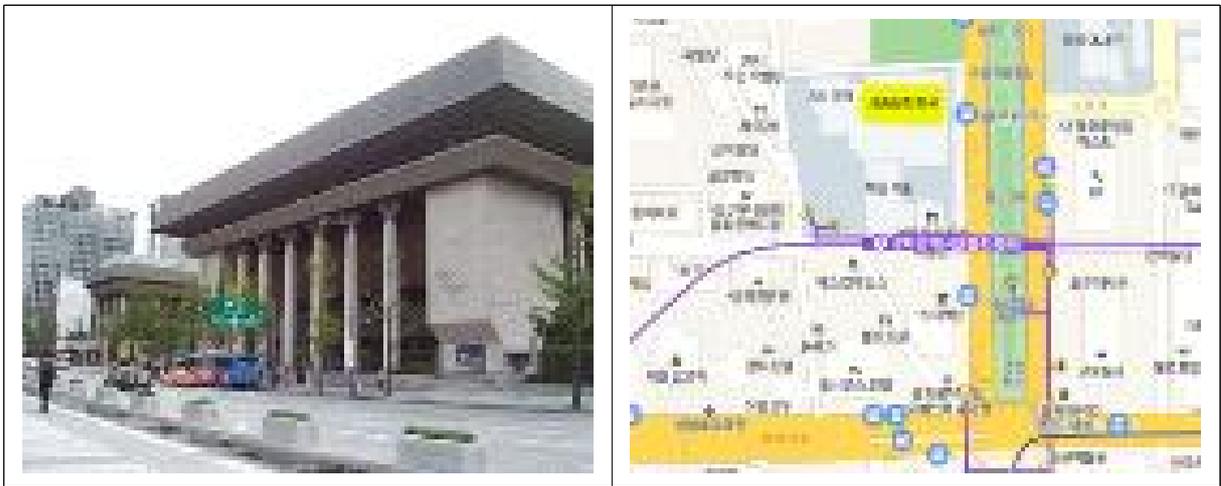
## 다.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

1)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

2) 규 모 : 대지 55,758 $m^2$ , 건물 63,396 $m^2$  (지하 3층, 지상 6층)

- 공연장(세종대극장, M씨어터, 체임버홀, S씨어터), 전시관(세종미술관, 세종충무공이야기), 교육시설(세종예술아카데미) 등

3) 전경 및 위치도

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1)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 2)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,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)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(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)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16조(사용료의 조정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·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(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)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

## 3)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

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, ..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나. 관련 방침 :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<4차, 시장방침 제29호, 공기업담당관-7785(2021.07.15.)>

- 1) 사유재산 6개월 간 임대료 50% 감면 및 공용관리비 감면
- 2) 손실분 및 환급분 보전 예비비 편성

다. 감면규모 : 세종문화회관 및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입점업체 9개소  
(단위 : 천원)

감면대상	감면 임대료(A)	감면 공용관리비(B)	총계 (C=A+B)
9개소	122,579	2,090	124,669

〈임차료, 공용관리비 감면 세부현황〉

(단위 : 원)

업체명	임차료	관리비	업체명	임차료	관리비
조유직 (약기점)	7,781,746	-	이마트24( 편의점)	19,972,297	-
카페베네	32,962,239	313,800	스낵 하우스	4,993,074	139,200
담소마루 (카페)	14,367,123	322,650	전망대 카페	13,282,490	-
라포레스타( 식당)	16,851,254	692,151	테라스 카페	3,967,497	297,951
베이커리 카페	8,400,986	324,110	소 계	122,578,706	2,089,862
			총계		124,668,568

- 공용관리비(3.3㎡/5,000원 산정)
- 조유직 : 체임버홀 내부로 별도 공용면적 없어 미부과
- 1건 부과사항 : 이마트, 스낵하우스/ 전망대, 테라스 카페

라. 예산조치 : 市 예비비 사용

마. 합 의 : 예산담당관 예비비 사용협조

※ 작성자 :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팀 이혜숙 (☎ 2133-2527)